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888

발의연월일: 2021. 10. 20.

발 의 자:소병훈·오영환·임종성

문정복 · 김영배 · 인재근

윤재갑・남인순・조오섭

허 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관리청이 도로 노선을 정하여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지정한 도로 노선을 변경하거나 그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국도 또는 국 가지원지방도로 변경이 필요한 도로 노선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도로 노선을 지정·변경하여 고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도로의 지정·변경 절차에 따른 도로 등급 조정의경우 도로 노선 승격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수요조사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예측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짧은 수요조사 기간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5년마다 또는 수시로 도로 노선 지정·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도로 의 등급을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여건 변화를 충실히 반영한 도로의 조정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들의 안전 확보와 교통편의를 제공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1조의2(도로의 등급 조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5년마다 도로 노선 지정·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도로의 등급을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사업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통량이 현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도로 노선 지정·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할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로의 등급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로의 등급을 조정하려면 도로 노선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조정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5년마다 도로 도로 노선 지정·변경의 티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도로의 등급을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사업 등 대통령	현 행	개 정 안
상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도로 노선 지정・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로의 등급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 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로의 등급을 조정하려 면 도로 노선을 관할하는 시・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정 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제21조의2(도로의 등급 조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5년마다 도로 도로 노선 지정·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도로의 등급을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교통량이 현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도로노선 지정·변경의 타당성을검토할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따라 도로의 등급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따라 도로의 등급을 조정하는 명우에는 국토교통부정관은 제1항에따라 도로의 등급을 조정하려면 도로노선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의견을 미리들어야 한다.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